

의안번호	2219694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6.7.3.
추계번호	26F325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한 7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39억원 등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총 273억원(연평균 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4년, 소득세 및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누적	연평균
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7년 연장 (안 제67조)	-39	-39	-39	-39	-39	-39	-39	-273	-3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67조(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7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3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7조(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에 신고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함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(2021~2025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1~2025년) 감면실적: 소득세 1억원, 법인세 38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영어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,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및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
 - 영어조합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정 한도¹⁾ 내에서 법인세 면제
 -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일정 한도²⁾ 내에서 면제, 초과분은 5% 세율로 분리과세
 -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·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감면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3.12.31.
-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5년 51억원 수준임
 - 연평균 감면실적: 소득세 1억원, 법인세 38억원

1) 현행 동법 시행령 기준, 사업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:
(연근해·내수면어업 발생 소득) 3천만원×조합원수×(사업연도 월수÷12),
(기타소득) 1,200만원×조합원수×(사업연도 월수÷12)

2) 현행 동법 시행령 기준, 과세연도별로 1,200만원 한도

[표 2]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계	29	36	36	39	51
- 소득세	0.2	1	0.02	0	0
- 법인세	29	35	35	39	51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(2021~2025) 연평균 감면실적: 소득세 1억원, 법인세 38억원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8~203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
계	39	39	39	39	39	39	39
- 소득세	1	1	1	1	1	1	1
- 법인세	38	38	38	38	38	38	38

(3) 추계결과

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39억원 등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총 273억원(연평균 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4년, 소득세 및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누적	연평균
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7년 연장 (안 제67조)	-39	-39	-39	-39	-39	-39	-39	-273	-3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